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토의견서

(유만희 의원)

-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.
  
-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  
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 
의안번호 제3282호,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 
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  
-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 
한강공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,  
비상벨, 음성통화장치, 조명시설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 
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 
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, 원안동의 합니다.
  
-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